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7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61460(본소) 용역대금 2016가합502765(반소) 원상회복 등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아이디에스엔트러스트
피고(반소원고)	삼양식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3,483,331원과,
가. 그 중 29,0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37,345,287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38,841,287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165,286,287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38,841,287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43,989,287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67,881,287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38,700,487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각 2015. 10.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그 중 38,682,887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38,691,687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38,700,487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38,691,687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38,682,887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38,735,687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1,372,8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각 2016. 7.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5,301,13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합전자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라면, 스낵류 등 식품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1.경 원고에게 피고의 업무 운영 시스템의 현황에 관한 진단을 의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업무 현황을 점검한 후 2011. 12. 9. 피고의 업무 운영 시스템의 문제에 관한 진단 결과 및 원고가 제공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진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5. 4. 원고가 피고의 기업 내 ERP, BI(Business Intelligence,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경영진 정보 시스템), 그룹웨어(Groupware) 등을 포함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을 3,259,303,700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이하 '제1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제1공급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조(시스템 구축 업무의 범위와 내용)

1. 본 계약에 의거 원고가 구축하는 시스템의 범위 및 상세 내역은 첨부 문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단, ERP/BI/EIS Project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제안서 및 Kick-Off 자료에 준거한다.

제9조(자료제공 및 교육)

2. 원고는 피고가 서비스 대상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에 대한 사용자 교육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8. 10. 펌뱅킹솔루션, 연결솔루션, 수출입솔루션, 스팸차단솔루션, 수요예측솔루션의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2. 8. 10.부터 2013. 2. 6.까지, 계약금액을 3억 9,347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통합정보시스템 구



축 계약(이하 '제2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 계약기간을 2012. 11. 19.부터 2013. 3. 31.까지, 계약금액을 211,399,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시스템) 프로젝트 구축 계약(이하 '제3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제2, 3공급계약 또한 위 제1공급계약 제9조 제2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제1 내지 3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기업 내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한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3. 8. 원고가 피고의 시스템 관리 용역[AMO(응용프로그램 관리업무), IMO(서버 관리업무), S/W License(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제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3. 3. 11.부터 2014. 2. 28.까지, 계약금액을 531,074,4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한 '삼양식품 ITO(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전산 업무 외부 위탁) 관리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조(ITO 관리 서비스 업무의 범위와 내용)

1. 본 계약에 의거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상세내역은 본 계약서 말미에 별첨한 '2013년 삼양식품 ITO 관리 내역서' 및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 제출한 '삼양식품 ITO : SAP ER SOW', 'SAP Premium Service 제안'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4조(대금의 지급)

3. 원고는 매월 말 월별 대금을 정산하여 원고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피고에게 교부하며, 피고는 해당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월의 익월 말일까지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현금 지급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교육)

2. 원고는 피고가 서비스 대상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에 대한 사용자 교육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후 위 용역계약은 갱신되었으며 계약금액은 1년 기준 565,553,132원으로 인상되었다.

마.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6. 1. 31.까지 피고에게 시스템 관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이후 일부 용역대금을 연체하였다.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용역대금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세금계산서 발행일	변제기	품목명	미수금 (원, VAT포함)
2014. 6. 25.	2014. 7. 31.	삼양식품 MA 그룹웨어	29,040,000
2015. 1. 26.	2015. 2. 28.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1월	37,345,287
2015. 2. 2.	2015-03-31	sass-CRM_GPS서비스제공	1,496,000
2015. 2. 25.	2015-03-31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2월	37,345,287
2015. 3. 2.	2015-04-30	sass-CRM_GPS서비스제공	1,496,000
2015. 3. 16.	2015-04-30	삼양식품 SAP MA(2015년분)	126,445,000
2015. 3. 25.	2015-04-30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3월	37,345,287
2015. 4. 2.	2015-05-31	sass-CRM_GPS서비스제공	1,496,000
2015. 4. 27.	2015-05-31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4월	37,345,287
2015. 5. 4.	2015-06-30	sass-CRM_GPS서비스제공	1,496,000
2015. 5. 19.	2015-06-30	V3 NET * 12 (EA)	5,148,000
2015. 5. 26.	2015-06-30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5월	37,345,287
2015. 6. 2.	2015-07-31	sass-CRM_GPS서비스제공	1,496,000
2015. 6. 25.	2015-07-31	삼양식품 MA 그룹웨어	29,040,000
2015. 6. 25.	2015-07-31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6월	37,345,287
2015. 7. 2.	2015-08-31	CRM_GPS서비스제공(user 154명)	1,355,200
2015. 7. 24.	2015-08-31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7월	37,345,287
2015. 8. 3.	2015-09-30	Sass-CRM-GPS서비스제공	1,337,600



2015. 8. 25.	2015-09-30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8월	37,345,287
2015. 9. 2.	2015-10-31	Sass-CRM-GPS서비스제공	1,346,400
2015. 9. 25.	2015-10-31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9월	37,345,287
2015. 10. 2.	2015-11-30	Sass-CRM-GPS서비스제공	1,355,200
2015. 10. 25.	2015-11-30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10월	37,345,287
2015. 11. 2.	2015-12-31	Sass-CRM-GPS서비스제공	1,346,400
2015. 11. 25.	2015-12-31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11월	37,345,287
2015. 12. 2.	2016-01-31	Sass-CRM-GPS서비스제공	1,337,600
2015. 12. 24.	2016-01-31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12월	37,345,287
2016. 1. 5.	2016-02-28	Sass-CRM-GPS서비스제공	1,390,400
2016. 1. 25.	2016-02-28	정보시스템관리서비스 대금 1월	37,345,287
2016. 2. 2.	2016-03-31	Sass-CRM-GPS서비스제공	1,372,800
합계			693,483,33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3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합계 693,483,331원 및 그 중 2,904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1.부터, 37,345,28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5. 3. 1.부터, 38,841,28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5. 4. 1.부터, 165,286,28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5. 5. 1.부터, 38,841,28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5. 6. 1.부터, 43,989,28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5. 7. 1.부터, 67,881,28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5. 8. 1.부터, 38,700,487원에 대하여는 같



은 2015. 9.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10. 13.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 중 38,682,88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5. 10. 1.부터, 38,691,68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5. 11. 1.부터, 38,700,48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5. 12. 1.부터, 38,691,68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6. 1. 1.부터, 38,682,88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6. 2. 1.부터, 38,735,68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6. 3. 1.부터, 1,372,8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6. 4. 1.부터 각 이 사건 2016. 7.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6. 7. 26.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ERP 시스템의 도입 효과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제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개선과제 정의서에 정한 내용대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 필요조치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의 ERP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최소 약 56억 원에서 92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 위 비용절감 효과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원고는 위 ERP 시스템의 비용절감 효과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공급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항)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제1항)이므로 이를 취소하며,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5,301,137,0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공급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제공한 진단결과보고서(을 제1호증) 중 '삼양식품 ERP 도입 시 추정 기대효과'라는 목차 아래 'Potential Annual Benefits(가능한 연간 수익)'로 'Conservative Estimate(보수적인 추정치) : 56억 5,010만 원', 'Likely Scenario(실현 가능성이 높은 추정치) : 92억 9,640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ERP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최소한 56억 5,01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을 보장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위 진단결과보고서에서 '추정 기대효과', '추정치', '가능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가 제시한 위 각 수치가 그만큼의 비용절감 효과가 반드시 발생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또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RP 시스템 도입 후 연간 약 42억 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위 시스템 도입으로 위 진단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판매업체가 그 제품을 홍보할 때는 그 효과를 최선의 결과를 가정한 상태에서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피고의 경영진 또한 그러한 통례를 감안한 상태에서 위 결과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ERP 시스템은 '도구(tool)'라는 특성상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에 따라 그 운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의 적극적인 적응 및 활용 노력이 요구되므로 그 비용절감 효과의 정확한 예측은 몹시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제1공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위 ERP 시스템의 효과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소 약 56억 원에서 92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의 발생이 보장된다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앞서 2)항에서 본 원고가 작성한 진단결과보고서의 문언, 통상적인 홍보 관행, ERP 시스템의 제품 특성 등



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착오는 오로지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중대한 과실 역시 이에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그렇다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공급계약 제3조 제1항 및 원고가 작성한 개선과제 정의서(을 제2호증)의 내용에 따른 자금예측 시스템, 협력사 평가관리 시스템, 자동계측 및 입력관리시스템, 통합적 계약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지 않았고, 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가 ERP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비롯한 제반 필요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설령 위 개선과제 정의서를 이 사건 각 계약의 수행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은 계약 체결 전에 ERP 시스템의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일종의 '턴키(turn-key)' 계약으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임의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대폭 감소시켰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용역대금 5,301,137,060원 상당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개선과제 정의서에 따른 ERP 시스템 구축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작성한 2012. 6.자 개선과제 정의서(을 제2호증)가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상 이행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 갑 제20, 21, 23,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개선과제 정의서는 '관련부서, 합의검토, 검토승인' 등의 란을 두고 있는 사실, ② 개선과제 정의서에 열거되어 있는 과제들은 위 문서상 'ERP 과제' 또는 'Non ERP 과제'로 분류되며 실제 'Non ERP 과제'로 분류된 항목들이 다수 제시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12. 4. 24. 제시한 '삼양식품 PI & Project Plan'(프로젝트 추진계획, 갑 제31호증)에서는 개선과제 정의서에 관하여 'Analysis'(분석) 단계에서 작성되는 '개선기회를 grouping하여 정의한 개선(PI) 과제 정의서'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 ④ 위 개선과제 정의서는 관리회계, 재무회계, 자금관리, 영업관리, 해외영업, 마케팅, 물류관리, 구매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채권관리 등 총 11개 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나중에 작성된 2012. 7. 6.자 '삼양식품 프로젝트 준비'(갑 제20호증) 및 2012. 7. 9.자 '삼양식품 및 자회사 ERP 시스템 구축 사업수행계획서'(갑 제21호증)는 관리회계, 재무회계, 판매물류, 생산관리, 품질관리, 구매자재 분야에 관한 시스템 구축만을 언급하고 있어 위 개선과제 정의서에 비하여 수행 과제의 범위를 보다 좁게 정의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위 각 계약에 의한 ERP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이후 시스템을 검수하고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개선과제 정의서는 원고의 이행의무 범위에 관하여 확정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회사 운영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과제로 나열한 것으로 향후 피고의 검토 및 결재를 거쳐 원고의 최종 수행과제를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중간 단계의 문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개선과제 정의서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행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ERP 시스템의 사용을 위한 제반 필요조치 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을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공급계약 제9조 제2항 및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1항, 제8조 제2항 이 원고는 피고가 ERP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 위 용역계약 제3조 제1항이 인용하고 있는 'SAP Premium Service 제안'(을 제3호증)은 원고로 하여금 'Help Desk Service'(장애 및 문의사항에 대한 대고객 창구서비스), 'Problem Management Service'(시스템 운영상의 문제 및 장애 해결 서비스), 'System Management Service'(시스템 운영 자원의 최적화 및 업무환경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운영시스템 유지 서비스) 외에도 'Value Added Service'(부가서비스)로 결산지원 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 서비스, Process/Application 운영효율진단 서비스, 세미나/뉴스레터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성공적인 정보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가이드', '전사 차원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교육의 실시', '특정 부문의 Process 및 특정 Application의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위 규정들 대부분은 원고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스템 사용을 위한 필요 조치 의무 및 부가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수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ERP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다르게 볼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증인 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ERP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4 내지 29, 6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ERP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자 교육을 제공하고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수익률) 성과관리에 관하여 피고의 경영진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설령 원고가 앞서 본 부가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계약의 경우 원고의 계약상 주된 채무는 ERP 시스템 구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이고, 특히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응용프로그램 관리업무, 서버 관리업무, 라이선스 제공 업무를 원고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 밖에 위 'SAP Premium Service 제안'에 열거된 나머지 부가서비스가 부수적 채무가 아닌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턴키 계약에서의 업무 범위 임의 감축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이 'ERP/BI/EIS Project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제안서 및 Kick-Off 자료에 준거한다.'고 규정하여 그 체결 당시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음은 인정되나, 그 후 원고가 작성한 위 2012. 7. 6.자 '삼양식품 프로젝트 준비' 및 2012. 7. 9.자 '삼양식품 및 자회사 ERP 시스템 구축 사업수행계획서'가 피고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 범위를 감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예비적 청구원인)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개선과제 정의서에 정한 내용대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 필요조치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 중 일부로서 5,301,137,060원을 배상하여야 하거나, ERP 시스템의 도입 효과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적어도 그 기대효과를 과장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 중 일부로서 5,301,137,06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위 'SAP Premium Service 제안'에 따른 일부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밝힐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RP 시스템의 도입 효과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나(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ERP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해당 수치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을 보장한 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절감 효과에 관한 설명이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이삼윤



.
.
: 2018-05-28

판사 신세희